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예금보험공사 UN Global Compact 이행보고서 (CoP)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목 차

I . UNGC 지지문 1

II . 예금보험공사 소개 2

III . UNGC 10대원칙 이행내용 5

I. UNGC 지지문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자로서 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7일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10대 원칙을 조직의 전략과 문화로 내재화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번 이행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UN Global Compact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금자·금융회사·정부·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UN Global Compact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9. 7. 10.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 성 백

II. 예금보험공사 소개

1

설립 목적 및 근거, 주요 업무

□ 설립 목적 및 근거

-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96.6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

□ 주요 업무

-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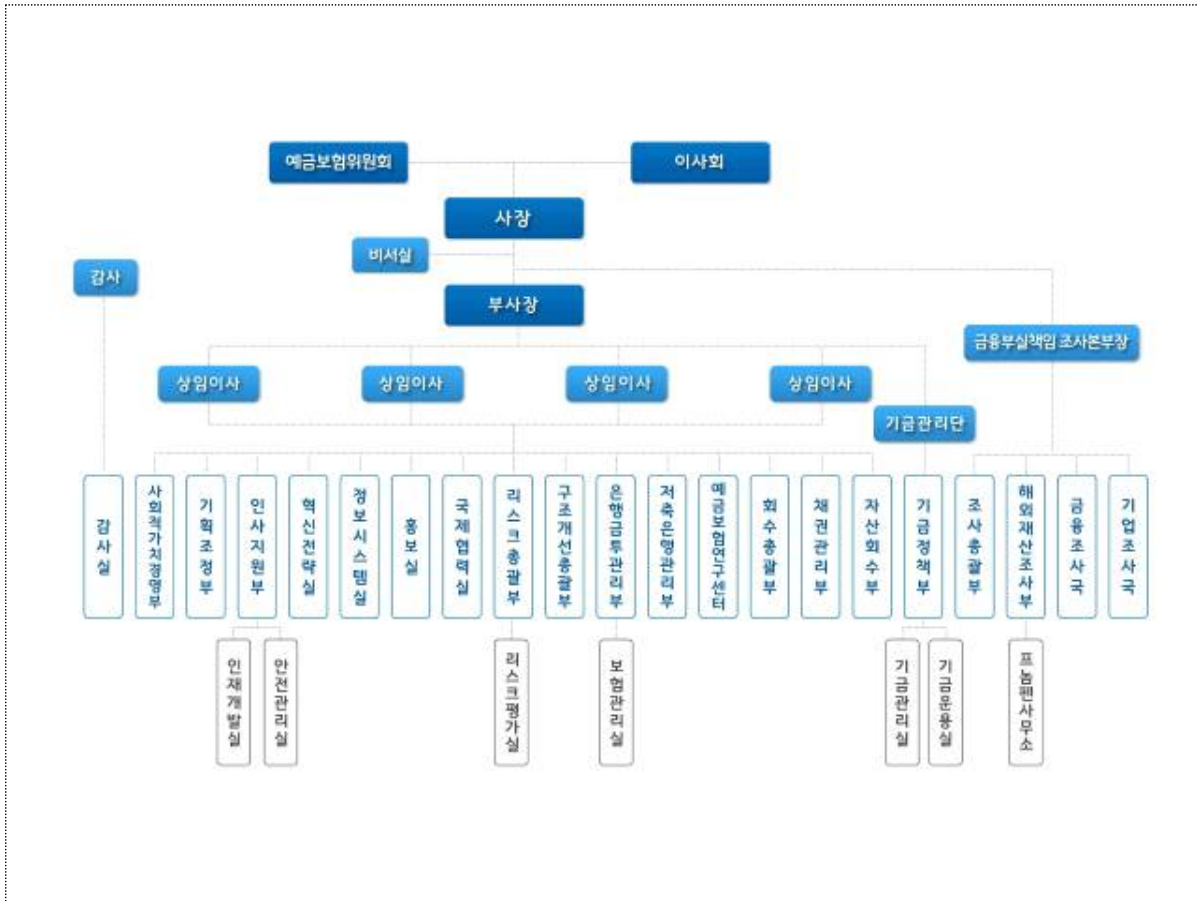
의사결정체계, 조직, 인력 및 예산

□ 의사결정체계

- (예금보험위원회) 사장,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
 - 기금채권 발행, 기금운용계획,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 기금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이사회)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직) 29개 부서(14부·6실·2국·6부서내실·1사무소)



□ (인력) 임원 7명, 직원 736.25명(알리오 공시 기준)

(19.4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직 원				합계
	사장	감사	상임이사	소계*	일반직	별정직	업무지원직	소계	
현 원	1	1	5	7	599	88.25	49	736.25	743.25*

* 비상임이사(7명)는 공사 소속인력이 아니므로 현원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8시간/일)로 환산하여 계산

□ (주소 등)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번지, 02-758-0114

3

주요 연혁

- '95.12.29 : 「예금자보호법」 제정(예금보험제도 도입)
- '96. 6. 1 : 예금보험공사 설립
- '97. 1. 1 : 은행권 대상 예금보험업무 개시(예금 부분 보장)
- '97.11.19 : 예금 전액 보장 실시
- '98. 4. 1 : 예금보험기금 통합
 - ※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등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를 공사로 일원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외에 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
- '01. 1. 1 : 예금 부분 보장으로 환원
- '03. 1. 1 :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분리
 - ※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
- '04. 1. 1 : 신용협동조합을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 '09. 1. 1 : 목표기금제 시행(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 '11. 4. 1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 ※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 '12. 3.26 : 조사대상 상호저축은행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 '14. 1. 1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 '15.12.22 : 보호대상 범위 확대,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부과(예금자보호법 개정)
- '16. 6.23 :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시행령 개정)
- '17. 9.21 : 세계은행(WB)과 MOU체결(개발도상국의 예금보험제도 육성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
- '18. 6.22 :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 출범

III. UNGC 10대원칙 및 이행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1

[인권]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헌법 제10조 및 UNGC 10대 원칙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제정·시행하고,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 서약을 함으로써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 임직원의 윤리·인권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사항 >

- 전통시장 상인 및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 제공
 - 금융소외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금융회사를 위한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운영
 -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보호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예금보험로고 표시제도 도입
 - 베트남,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예금보험제도 후발국가에 대한 지식나눔 활동(KDIC-Knowledge Sharing Program) 실시
-
- 내부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윤리·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및 동반성장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예금보험공사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
-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교육 실시 횟수 : 7회
- 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사이버교육 실시(20시간)
-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AAA등급 획득

2

[인권]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인권경영세칙 제정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 및 구체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임직원 뿐 아니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외부적으로 고객의 소리(VOC)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업무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 상담제도, 신입직원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임직원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사항 >

-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사이버 및 집합 교육)
- 신입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및 멘토링 제도 운영
- 승격직원 대상 KDIC-Step up 연수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또한, 임직원이 인권 침해로 인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된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또는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사법당국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며,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인권경영세칙」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설치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전면 개선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외부전문가 활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편견요인을 완전 제거한 블라인드 채용 강화

3

[노동]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헌법, 노동관계법, ILO 등 국제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을 존중·지원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사간 상호신뢰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사간 협의채널 >

- 노사 협의회(분기1회)를 통한 노사관련 핵심의제 협의
- 노사 실무자 협의회(수시) 운영
- 노사공동실무 TF 운영을 통한 노사공동 실무 논의 및 추진

- 노사간 협의채널 외에도 고충상담 센터 공동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노사 공동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 및 조합원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사항 >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수시)
- 직원 고충상담센터 공동 운영
- 노사 공동 워크숍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종합 노사관계 진단지수(5점 만점) : 3.38점('17년) → 3.53점('18년)
- 노사분규 발생 건수 : 0건
-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4

[노동]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노동]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장과 가정생활간 균형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정의 날 퇴근시각 PC-OFF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시행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 선택제, 임신직원 시간외근무 제한 및 단시간 근로 등 가정친화적인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졸 채용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입사할 경우 동 직원이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직무를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탄력적·간주근로시간제, 휴일대체를 포함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 휴가저축제 도입, 연차축진 휴가 확대 등 휴가 사용 실효성 제고
- 일과삶 균형지수(KDIC-WLBI) : 74.8점('17년) → 77점('18년)
- 부당노동행위 발생 지적건수(노동청, 법원) : 0건

6**[노동]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성별·학력·연령·출신지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NCS채용을 도입하여 공정한 입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위·직급 분리를 통해 능력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장애인·지역인재·고졸자 등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사항 >

- (장애인) 채용 전형단계별 가점(15%) 부여
- (지역인재) 서류전형 우대 등 합격자 목표제(35%) 실시
- (지역인재) 비수도권 소재 대학 채용설명회 실시
- (고졸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채용전형 마련

- 또한, 여성 예비관리자의 경력개발 지원 및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 부여(3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지방인재 신규채용 : 6명(전체 신입사원중 15.4%)
- 고졸자 신규채용 : 2명(전체 신입사원중 5.0%)
-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 : 53.8%('17년 대비 11%p 증가)
- 임신시점부터 육아휴직 허용 개선

7

[환경]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8

[환경]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9

[환경]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환경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환경 문제에 대하여 사전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옥상공원 조성 및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사항 >

- 물품 구매시 친환경 물품(녹색제품) 중심 구매
- 사옥 에너지 사용량 관리
- 사회공헌 활동 중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포함
-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 일부 교체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온실가스 감축 : 전년대비 32.2% 절감
- LED 조명 설치율 : 91%(정부 권고안 : 80%)
- 녹색제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율 100% (정부 권고안 : 70%)
- 페트병 등 재활용품 사용 감소 : 15.8% 절감
- Paperless 회의 시스템 적용 : 종이 사용 연간 47만장 절감

[반부패]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행동강령 책임관 주관하에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모든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원은 취임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2급 이상 직원은 재산을 등록토록 하여 재임 및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급 이상 임직원에게 대하여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에 대한 재취업을 금지함으로써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경영의 날로 선포하여 청렴·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전 임직원이 선서하고 매월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으로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체 윤리경영지수 측정과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부패발생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권익위 주관) : 3등급('17년) → 2등급('18년)
- 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 주관) : 우수 등급(91.01점→ 93.19점)
- 자체감사활동 평가(감사원 주관) : 3년 연속 최고등급(A) 획득
- 내부감사 평가(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주관) : 최우수상 수상